

정도경영 실천하는 LG홈쇼핑

LG홈쇼핑은 홈쇼핑사업 개시 6년만에 연 매출 1조원을 돌파하는 고속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LG홈쇼핑의 성장은 그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 많은 우수 중소기업들에게 판로를 열어주는 등 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런 점에서 출범 초기부터 LG홈쇼핑은 중소협력업체와의 건전한 관계가 홈쇼핑사업의 성공정책을 위한 중요조건으로 생각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압적 자세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우수상품 발굴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홈쇼핑사업 자체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LG홈쇼핑은 중소협력업체를 홈쇼핑사업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여길 뿐 아니라, 소비자에 버금가는 '고객'으로까지 격상시켰다.

한편 LG홈쇼핑은 그 동안 중소협력업체와의 원만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출이 높아지고 협력업체 및 직원의 수가 많아지면서 자칫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해이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찍부터 예방하는 활동도 펴가고 있다.

올해 1월 발족한 '경영진단팀'은 LG홈쇼핑이 기업운리의 바탕위에서 정도경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사내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도경영 실천지침」을 마련해 전사적인 공유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이러한 사항 발생시 거래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문화했다.

여기에는 금전수수, 선물수수, 각종 편의제공 등 가능한 모든 사례를 들어 회사에 이를 신고하고 반납하는 과정을 명시한 것이다.

규정 위반사례를 인지한 임직원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회사는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징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설 명절 전에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시 거래관계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회사의 공식입장을 문서로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숙지한 정도경영지침에 대한 '실천서약서'에 사장이하 임원과 전 직원이 서약을 하고 윤리경영, 정도경영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국내 업계 1위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LG홈쇼핑은 2010년까지 세계 1위의 홈쇼핑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르는 날, 건전한 협력업체도 그 자리에 함께 서 있겠다는 것이 LG홈쇼핑의 의지이다.

현대백화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현대백화점 '공정거래법' 준수 결의 및 'cyber감사실' 가동-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www.e-hyundai.com)은 2월 2일 오전 11시부터 무역센터 10층 에메랄드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협회 관계자, 협력업체 대표 및 이병규 사장을 포함한 경인지역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대백화점 이병규 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향한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향후 자율준수위원회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협업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공정거래의 자율준수 및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더불어 자율준수 감시 및 관리자를 두는 사무국을 신설, 대표이사 직속으로 하여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활동의 결과를 사업소 및 직원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도 공정거래와 관련한 협력업체의 불만사항을 "윤리실천위원회" 운영과 연계한 cyber감사실(ethics.e-hyundai.com)을 통하여 향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중이다.

LG전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소개

LG전자는 '94년 정도경영의 이념을 바탕으로 윤리규범을 제정·선포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해 오고 있다.

이런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에 대한 mind를 확산하여, 모든 거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정도경영의 문화정착과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 재고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이 제시하는 7개의 필수 요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고 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천명

'94년 윤리규범을 제정·선포하면서 대외적으로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고, 전 임직원이 실천서약을 한 바 있으며,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 운영키로 하고 증권거래소에 LG전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시행 사실을 공시하는 한편, 전 임직원에게 E-mail과 전자게시판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였다.

2) 자율준수 조직 운용 및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95년 5월 공정거래 정책을 위해 국내기업 최초로 "LG전자 공정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문화추진실(현 공정문화그룹)을 상설조직으로 신설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최근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3개의 분과 위원회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지난 2월 27일 2002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대외협력팀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하였다.

3) 자율준수편람 작성 배포

'95년 국내 최초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제작·배포한 이래 현재까지 분야별로 6종의 자율준수편람이 제작·배포되었으며, 현재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한 설명과 행동지침을 포함한 편람의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4) 공정거래교육

교육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분류된 과정을 수립하여 전 임직원들로 하여금 공정거래 마인드를 함양하고 공정거래 준수 의지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학술교육과 더불어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형태인 E-learning을 통해 보다 많은 임직원이 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분야별 관련 임직원은 필수 과정화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5) 진단, 컨설팅

공정거래 관련 실무부서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 실시 및 문제점 시정을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실무부서의 질의사항에 대해 자율준수협의회 사무처(공정문화그룹)를 통해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표시광고법 저촉 여부를 사전 검토토록 하고 있으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문안에 대한 취소 및 수정 요청권을 공정문화그룹에 부여하고 있다.

6)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사내 인사징계규정

“임직원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행위에 관여한 경우”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02년 1월 사내 인사징계규정을 마련하였다.

7) 자율준수 활동상황 이사회에 보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교육, 진단 결과 및 중요사안에 대해 이사회에 년 2회 이상 보고할 예정으로 있다.

8)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교육, 진단, 컨설팅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 및 문서는 자율준수협의회의 사무국인 공정문화그룹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다.

9) 기타

LG전자는 정도경영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할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거래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육성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공정위 인사

인사발령일 : 2002. 2. 22.

- ◎ 과장급(서기관) 전보
OECD사무국 파견근무
(2002. 2. 28~2004. 2. 28)

김재우(국제기구과장)

인사발령일 : 2002. 2. 23.

- ◎ 과장급(서기관) 전보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 파견근무
(2002. 2. 8~2003. 11. 30)

김순종

인사발령일 : 2002. 3. 2.

- ◎ 이사관 전보
명예특별승진(이사관) 및 명예퇴직

송하성(심판관리관 부이사관)

인사발령일 : 2002. 3. 4.

- ◎ 서기관 전보
국제기구과장

김치걸(OECD사무국 고용 휴직)

인사발령일 : 2002. 3. 11.

- ◎ 과장급(서기관) 전보
심판관리2담당관
광주사무소장
대전사무소장
심판관리3담당관
부산사무소장
◎ 4~5급 전보
총무과(경리계장)
경쟁촉진과
기업결합과
표시광고과
전자거래보호과 업무지원
전자거래보호과 업무지원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최정호(광주소장 직대)
임은규(대전소장 직대)
송준호(부산사무소장)
김정주(총무과)

이영일(감사담당관실)
오행록(심판3과)
이승규(경쟁촉진과)
권영익(행정법무담당관실)
송상민(행정법무담당관실)
이준길(심판2과)

인사발령일 : 2002. 3. 12.

- ◎ 부이사관 승진
부이사관
부이사관

김태구(공동 행위과장)
손인옥(소비자기획과장)

※ ()은 前補職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흐름과 주요 쟁점(2)

정호열 | 성균관대학교 법대 교수

※ ● ● ● ● ● VII. 항소심판결 이후의 사건의 전개

1. 지방법원 환송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

항소심판결이 내려진 후 소송은 다시 연방지방법원에 환송되었고, Colleen Kollar-Kotelly 판사가 새로이 사건을 맡아 독점유지 혐의와 관련된 구제명령절차에 대한 심리가 2001년 9월 12일부터 시작되었다. 다만 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19개의 주 원고들 중 New Mexico는 다른 주들과 별도로 소송의 합의를 함으로써 원고는 18개 주와 연방법무성으로 변경된 바 있다.

한편 MS는 2001년 8월 7일 연방대법원에 이 사건을 상고하였다. 상고장에서 MS는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결정 중 독점유지 혐의를 인정한 6월 28일의 항소법원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청구했다.¹⁾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2001년 10월 10일에 MS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연방법무성과 MS사, 동의판결을 위한 최종판결문안 제출

2001년 11월 6일 그 동안 진행되어온 반독점 소송에 대해 연방법무성은 MS사와의 합의에 도달하여 이를 최종판결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연방지방법원에 요구함으로써²⁾, 약 6년간 지속된 MS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합의의 내용으로는 MS의 위법행위를 금지하고 장래의 유사행위 발생의 금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판결문 제안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컴퓨터 제조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특정 MS의 경쟁소프트웨어를

* 본 글은 월간 「공정경쟁」 제78호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흐름과 주요 쟁점(1)」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1) Microsoft's 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 (8/7/01) 참조.

2) Stipulation and Revised Proposed Final Judgment (11/06/2001).